



제 39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168호)

2022.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정 연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2. 4. 8.

3. 회 부 일 : 2022. 4.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초기 계획 대비 신청저조에 따른 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한 경영이양직불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을 추가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제출받고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선정결과를 신청 어업인에게 알리는 주체를 읍·면·동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 ----- ----- ----- ----- ----- ----- ----- -----.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u>유지할 것</u>	1. ----- ----- ----- -----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

	<u>과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u> <u>원은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계</u> <u>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u> <u>할 것</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 ----- ----- ----- ----- <u>특별자치도지사등</u> ----- ----- ----- -----.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u>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특별자치도지사등은</u> ----- ----- ----- <u>확인하여야 한다.</u>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 ----- ----- ----- 신 <u>청한 어업인</u> -----.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u>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u>	④ <삭 제>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

현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14조¹⁾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어 연도별 지급 계획 인원은 300명(매 년 신규신청 기준)이나, 2021년 6명·2022년 8월 기준 8명으로 총 14명과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 중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계획인원 대비 실제 집행인원이 적은 사유는, ① 어촌계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배당·어업보상·어업활동 등 혜택 대비 낮은 직접지불금 지급²⁾, ② 75세~80세 이상 어촌계원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에 제외되며, 70세 이상은 단기간 지원금 수령으로 참여 기피, ③ 55세이하의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후계어업인 구인 애로, ④ 경영이양직불제 신청 읍·면·동 사무소가 195개소로 신청접수 업무 전문성 한계 및 관리애로(농림부의 경우 농어촌공사 전담 추진) 등이 있다고 밝힘.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3.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을 완료할 것
4. 그 밖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2) 항만 및 발전소, 해상풍력 등 허가어업 및 마을어업 보상(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년도별 어가소득은 2021년 기준 5,200만원임.

이에 개정안은 제도도입 초기 계획 대비 신청저조에 따른 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해 경영이양직불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취지 달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 제14조제1호 관련,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어촌계 인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계의 계원은 전국 3,343명으로, 개정안 통과 시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보유한 신규 어촌계의 계원에게도 동 개정 내용이 적용가능한 바, 경영이양 직불제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임.

[2013년 이후 신설 어촌계(10년 미경과)]

(단위: %, 명)

구 분	계	경인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어 촌 계	78	5	-	11	1	33	1	25	-	2
어촌계원	3,343	103	-	597	80	1,882	13	641	-	27

또한, 개정안 제15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읍·면·동장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나 선정하는 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이분화되어 있어,³⁾

각 읍·면·동 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관련 전문인력의 부재에 따른 전문성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어업인에 대한 전문성이나 행정효율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14조제1호 본문 및 단서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등을 5년으로 한다.
2. 제14조제2호의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시행일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법 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시행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안부칙 제2조제1호의 자격 유지 기간 ‘등’에서 자격 유지기간 외에 필요한 바가 없으므로 ‘등’을 삭제하는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4